보도자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보도일시	2019. 5. 13.(월) 석간 (인터넷·온라인 : 5. 13.(월) 10: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5. 13.(월)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부서	교육부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사무관 정아름(044-203-6852) 사무관 권지은(044-203-6871)	
	교육부 대입정책과	과장 송근현, 사무관 김재극(044-203-63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과장 이석래, 사무관 장정인(02-2110-2354)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과기정통부, 책임 있는 대학의 연구문화 확립에 나선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 및 조치 결과 발표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추진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 및 조치 결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교수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17.12), 와셋(WASET: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등 **부실학회 참가 문제**('18.7.)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광범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의 학술적 전문성, 법령으로 규정된 조사 절차의 준수 등의 사유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 오늘 발표 이후에도 미성년 공저자 등재 사안의 경우 관련 조사와 후속 조치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미성년 논문 공저자 논문 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 >>

□ **교수의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한 두 차례의 전수 조사 결과, **'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 검증의 책임이 있는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139건의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대학에서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상세 현황 [붙임 1]참조**

*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이들 5개 대학 가운데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의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검증결과를 '19.5.10. 제출한 서울대**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 한편, **교육부가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단을 구성**하여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통보('19.1.)**하고,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부정행위를 철저히 재검증하도록 요청하였다.

* 교육부 외 부처 : 과기정통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방부, 기상청, 농림부, 농진청, 보건복지부, 산업부, 해수부

○ 각 부처에서 재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대학에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자녀의 대학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되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하였고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였다.

○ 국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검증 수행 기관에서 해당 외국 대학으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고, **국내 대학 진학 학생의 경우 연구부정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 현재, **국내 대학에 '15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붙임자료 학생4)는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또 다른 국내 대학에 '09년도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붙임자료 학생7)*에 대해서는 논문의 입시 활용 여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대 교수 자녀의 경우 검증 결과를 '19.5.10 통보를 받았기에 추후 조사 예정

□ 한편, 교육부는 **'18년 7월부터 미성년 논문 저자의 윤리문제를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확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7월부터 시행한 실태조사는 교수의 미성년 자녀 실태조사 때 포함하지 않았던 **2년제 대학 교수와 비전임 교원, 그리고 프로시딩(proceeding)***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 프로시딩 :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이 아니라 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논문

○ 실태 조사 결과, '07년 이후 10여 년의 기간 중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하였으며, 이 가운데 **교수 자녀 21건**(논문 8건, 프로시딩 13건), **친인척·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수 자녀 21건은 조사대상에 비전임교원, 프로시딩 등이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139건 외에 추가로 적발된 것임

○ 현재 211건의 논문에 대해 대학의 자체 연구부정 검증이 완료되어 교육부로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나머지 187건은 검증을 진행 중이다. 대학 자체 검증 결과, **동의대와 배재대 소속 교수의 프로시딩과 논문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포함**되었으며, 공저자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은 두 교수의 자녀로 확인되었다.

○ 동의대는 교수에 '견책'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배재대는 '경고' 처분을 하였다. **'17학년도에 교과일반 전형으로 국내대학에 진학한 동의대 교수 자녀는 해당 논문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6학년도에 특기자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배재대 교수 자녀는 연구부정 논문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 교육부는 **대학 자체 검증 결과 연구부정이 아님으로 판정된 209건에 대해서는 교육부 검토자문단에서 검증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재조사 등을 추진**하고, 검증 진행 중인 187건은 대학에서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동일한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 부실학회(와셋, 오믹스) 참여 실태 조사 및 후속 조치 결과 >>

□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해 7월 대표적인 부실학회로 지목된 바 있는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 전수조사 및 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가연구개발비로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건강한 연구문화의 저해 요인으로 보고, 지난 해 8월부터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일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교육부가 조사한 **2014년 7월 이후 4년제 대학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여 실태 및 대학별 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부실학회 참석 연구자 실태 조사는 **1차 대학별 자체 조사('18.8~9월)**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직접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학의 조사결과와 비교·대조하여 검증하는 2차 조사**('18.9.~10월) 등 2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총 90개 대학 574명의 소속 교원이 808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부는 이들 연구자 명단을 90개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상세 현황 [붙임 2]참조**

○ 한편, '19년 4월부터 574명 가운데 **국가 연구비를 지원 받은 473명(655회)**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에 통보**하여 **△1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2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및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교육부 외 부처 :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중기부, 복지부, 농진청, 행안부 등

<< 대학의 미성년 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여 조사에 대한 특별 사안조사 추진 >>

□ 교육부는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학들이 두 사안에 대해 책무성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치했는지에 대해 특별 사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특별 사안조사는 ①**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②**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③**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 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조사대상 대학(가나다순) :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 사안조사는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 대상 대학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u>대학의 책무성 강화</u>를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 사전 예방 : 연구윤리 개념 · 유형 정비, 교육 강화 및 문화 조성
◈ 사후 조치 :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실태조사 · 공개
◈ 기반 구축 : 정부 · 대학의 연구윤리 관리 역량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학회 참석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대학이 강한 책무성을 가지고 책임있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 정착'을 목표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과 연속선상에서,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 정부는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고, 학문 발전을 위해 **'학술연구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연구윤리의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학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한다.

○ 현재 **법령상 대학에 연구 윤리의 확립과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의 일차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대학의 역할과 책임), 제16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책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연구비 재원의 77.4%**('17년 기준)**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가 지원한 연구 과제의 연구윤리 준수 및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관리·감독할 책무가 정부에 있고**, 이 과정에 대해 국민들에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시행할 필요성도 크다.

□ 이에,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에는 **연구의 자율성과 국가 연구지원 사업의 정부의 관리·감독의 책무성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였다.

○ 특히, **연구윤리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① 사전 예방 : 연구윤리 개념·유형 정비, 교육 강화 및 문화 조성

○ (**개념·유형 재정립**) **범부처 및 학계 협의**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연구윤리 문제를 포함해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재검토**하고 부처별 **소관 규정**의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 특히, 연구부정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연구자·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확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윤리 교육 강화**) 연구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하고, **대학 교수 및 총장 대상 연구윤리 교육 확대**를 통해 연구윤리 감수성을 제고한다.

- 또한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및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구윤리 교육·검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 **(질적 평가 강화)** 부실 학술활동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논문 편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인 점을 고려하여 **교원 업적평가 시 대표 논문 중심 질적 평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도 질적 평가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

※ (우수 학교사례 :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승진심사 시 논문 점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대표 논문(3~5편)에 대해 해외 유수 대학으로부터 동료 평가(Peer review)를 받음

○ **(시스템 구축)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학술정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의심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19년 상반기 시범개설)한다.

* **추진체계**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시스템·학술자료망(DB) 구축), 한국연구재단 등(연구비관리시스템 연계), 연구계(부실의심학회 신고·검증 등)

- 이와 연계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의견수렴**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부실학회 검증방안**을 **논의 중**이며, **인문사회분야** 부실학회에 대해서는 **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학술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한 부실학회 대응체계(안) : ① (연구자) 부실학회 의심 신고 → ② (연구계) 부실여부 검토 → ③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 실태조사 및 조치

② 사후 조치 :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및 실태조사·공개

○ **(엄정조치)** 연구부정행위자 판정 시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상향 조정**(5년 → 10년,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개정)하고, **국가연구비 부정 사용** 시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강화**한다.

- 더불어 대학별 **징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성 여부, 비위 정도 및 과실의 중대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시를 공유**한다.

- 또한 **고의적인 연구비 관리 태만, 연구부정행위 은폐·축소 등**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제한, 간접비 축소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적극적 조사지원**) 대학에서 자체 조사시 **연구윤리 검증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 인력자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요청시 외부 전문가를 파견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지원**한다.

○ (**연구윤리 실태조사**)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의 **재발방지 대책 등 우수사례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 (**학술지 평가 강화**) 학술지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 및 '**학술지 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논문 투고·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③ 기반 구축 : 정부·대학의 연구윤리 관리역량 강화

○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대학의 연구윤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 중장기적으로 연구윤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공론화** 할 예정이다.

※ (현행) 연구윤리 정보센터(서울교육대학교 위탁, '17~'19), 상담센터 등 운영 → (개선) **한국연구재단 내 상설 지원센터 설치**('20), 신고·상담기능 강화, 연구윤리 교육 확대·강화 지원,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컨설팅, 관련 자료망 구축 등

○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20년부터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에 **간접비·직접비 분리 지급**(오버헤드)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 (현행) 연구책임자가 간접비를 산단에 이체 → (개선) 간접비를 산단으로 직접 지급

- 또한 정부 연구개발 간접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대학에 한해 간접비를 연구지원 등에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접비 비목 제한의 폐지**를 검토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기정통부)」 간접비 지출 가능 항목 열거하는 규제(포지티브 방식 규제) →간접비 지출 불가 항목만 열거하는 규제(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개선

○ (**기관평가인증제 도입**) 대학의 자율적 연구윤리 책무성 확보를 위해 **대교협과 협업**하여 **대학 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연구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대학기관평가인증 3주기 평가('21~) 도입을 위해 지표개발 정책연구 추진('19~'20)

□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대학(대교협) 등과 협의하여 방안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규정 정비 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을 비롯하여 미성년 저자가 참여한 논문 등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끝까지 조사**하여,

- **부정행위 판정 및 대입에 활용된 사항이 확인되면 철저하게 조사·조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 아울러 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 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의결을 지원해, **부정입학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8.11.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19.5. 현재 교육위 법안소위 계류 중)

○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대학의 자체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 운영 중인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라며,

○ "학술연구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대학 차원**에서도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느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아울러,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수의 자녀 등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부당 저자 등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의 장이자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건강한 연구문화를 위한 모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 “최근의 연구윤리 문제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연구계가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한층 성숙해질 수 있는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교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 결과
2. 와셋(WASET) 등 부실학회 참가 실태조사 결과
3.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연구재단)
4.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1부(별도).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술진흥과 정아름 사무관(☎044-203-6852), 권지은 사무관(☎044-203-6871), 대입정책과 김재극 사무관(☎044-203-63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장정인 사무관(☎02-2110-23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결과** ('19.5 현재)

1. 개요 · 추진 경과

○ (개요) 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하고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 등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후 개선 조치

※ ('17.11.20) 고1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서울대 교수 '끔찍한' 자식사랑 보도

○ 추진경과

기간	주요내용	
'17.12.~ '18.1.	1차 조사 (자진 신고)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저자 **자진 신고(82건, 50명)**
'18.2.~3.	2차 조사 (자체 조사)	미성년 자녀 논문 저자 **자체조사 병행**, 전·현직 교원으로 확대 **(57건 추가, 37명)**
'18.3.~4.	**대학별 검증**	대학별 미성년 자녀 공저자 부정행위 1차 검증 및 결과 제출
'18.5.~11.	**검증결과 교육부 검토**	교육부 검토자문단 운영, 대학 검증결과에 대해 검토 진행 - 대학의 1차 검증결과 '연구부정행위 아님' 건에 대해 교육부 검토 결과 85건에 대하여 '부적절' 판정
'18.7.~11.	3차 조사	전체 미성년 저자 포함 논문에 대하여 전수조사 진행(410건) - 교수 자녀→ 미성년자 전체, 비전임교원 포함, 프로시딩 포함
'18.12~	**대학별 검증**	전체 미성년 저자 포함 논문**(410건)**에 대해 대학별 부정행위 검증 및 결과 제출(진행 중)
'19.1~	**대학·부처 등 재조사**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부절적' 검증 건(85건)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비 지원부처(기관)에 재검증 요청·진행 중

○ 관련 제도개선 진행

기간	주요내용
'18.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 미성년 논문 저자의 경우 '소속기관' 및 '학년' 표시 의무화
'18.4	**대입 자기소개서에 논문 관련 내용 기재 금지**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14년부터 논문(학회지) 기재 불가(전학년), '19년부터는 소논문도 기재 불가, 학생부 전형은 학교생활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만 평가에 반영
'18.11~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19.5월 현재 교육위 법안소위 계류 중) -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18.12	**연구관리 개선책 마련(2019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 미성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공저자 포함시 연구비 지원기관에 사전승인 의무화 - 성비위·갑질 연구자 적발시 1년 간 연구지원사업 지원 제외 등

2.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사안 : 139건

□ 교수 미성년 자녀(50교 87명, 139건) 논문 검증 추진상황

○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부정행위 검증 결과 : **'연구부정 있음' 12건***

* 당초 대학 자체조사 결과 '연구부정' 판정은 13건이었으나, 대상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기관(생명공학연구원) 재조사 결과 '연구부정 아님' 판정

- 대학 자체검증 결과 '연구부정 아님' 주장 127건에 대해 교육부 검토 자문단의 추가검토 결과 **'재조사 요청' 85건** 및 **'연구부정 아님' 확정 40건**

제출여부	대학검증결과 제출 (139건)									
대학 검증결과	1) 연구부정 (12건)			연구부정 아님(127건)						
검토자문단 검토결과 (연구비출처별)	검증결과 적절			검증결과 적절(40건)			2) 검증결과 부적절(85건)			재검토(2)*
	교육부	타부처	자체	교육부	타부처	자체	교육부	타부처	자체	타부처
	2	4	6	8	13	19	11	40	34	2

* 서울대가 '19.5.10에 제출한 '연구부정 아님' 2건에 대해서는 **교육부 재검토** 예정

1) '연구부정' 판정 논문 12건 조치 현황

소속 대학	대상 교수	대상 자녀	논문건수 (국비지원)	자녀진학대학 (진학년도)	사후조치 현황
경일대	ㄱ교수	학생1	2건	국외대학('17)	(교원) 교내연구비 환수 추진중 - 환수결정통보(10월) / 내용증명 2회 (학생) 진학 외국대학에 '연구부정' 판정 사실 통보 추진
		학생2	2건	국외대학('17)	
포항공대	ㄴ교수	학생3	1건 (농진청)	국외대학('13) * 현재 휴학(미등록)	(교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1년) (농진청,11.14) / 경고조치(11.27) (학생) 미등록 상태로 통보불가 입장
청주대	ㄷ교수	학생4	1건	국내대학('15) 학생부종합전형	(교원) 징계시효 만료, 서면경고 (학생) **대입에 미활용 확인**
가톨릭대	ㄹ교수	학생5	1건(과기부)	국외대학('15)	'부정있음' 최초 판정('18.10)→이의신청('18.11.) → 대학 재조사 결과 '부정없음' 알림('19.4.23) → **교육부·과기부 재조사 진행**('19.4~)후 조치 예정
	ㅁ교수	학생6	1건(교육부)	국외대학('16)	
서울대*	ㅂ교수	학생7	3건 (복지부2, 자체)	국내대학('09) 입학사정관전형	**'부정있음' 판정결과 제출('19.5.10)** ·(교원) 절차에 따라 징계 예정 ·(학생) 대입 활용여부 조사 추진
	ㅅ교수	학생8	1건(교육부)	국외대학('12)	**'부정있음' 판정결과 제출('19.5.10)** ·(교원) 절차에 따라 징계 예정 ·(학생) 진학 외국대학에 '연구부정' 판정 사실 통보 추진
5교	**7명**	**8명**	**12건(5건)**	**국외 6 국내2**	

* 서울대는 판정결과 피조사자 통보 후 현재 이의신청기간 중(~'19.6.8.)

2) 검증결과 '부적절' 판정에 따라 재조사 요청 85건 진행 상황

- 연구비 지원부처*(51건) 및 대학**(34건)에 부적절 검증 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며('18.12.~'19.1.), **재검증 진행상황 지속 확인** 중

* 검증결과 부적절 논문(85건) 중 국가 연구개발 과제 : 교육부(11건), 과기정통부(24건), 국립환경과학원(1건), 국방부(1건), 기상청(1건), 농림부(1건), 농진청(3건), 보건복지부(5건), 산업부(3건), 해수부(1건)
** 대학 자체 재원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대학에 재조사를 촉구(단, 현행 법령상 강제성은 없음)

3) 추진 체계

대학별 검증	→	검토자문단	→	연구비 지원 부처·대학	→	연구비 지원 부처·대학
대학진실성 위원회		대학별 검증 결과 검토 (교육부 주관, 연구윤리 전문가)		검증결과 부적절건 연구부정행위 재검증, 사후조치		최종 판정 및 조치 결과 교육부로 제출

※ 근거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의 예외), 제28조(재조사)

3. 미성년 저자 논문 공저자 등록 사안 : 410건

□ **전체 미성년 공저자(56교 255명, 410건) 논문 검증 추진상황**('19.5.10. 현재)

○ 전체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정행위 검증결과 : **'연구부정 있음' 2건**

제출여부	대학검증결과 제출 (211건)												검증 진행중 (187건)						미제출 기타*
부정여부	1) 연구부정(2건)						연구부정 아님(209건)												
구분	논문			프로시딩			논문			프로시딩			논문			프로시딩			
특수관계	자녀	지인	없음	자녀	지인	없음	자녀	지인	없음	자녀	지인	없음	자녀	지인	없음	자녀	지인	없음	12
건수	1			1			2	9	145	8	2	43	5	11	150	4	0	15	
합계	2						209						187						12

* 저자 사망·미성년 저자 연락 불가 등 검증 진행 불가(대학 연구윤리위원장 명의 사유서 제출)(12건) 등

- 총 **410건**의 논문(프로시딩)에 미성년 저자가 등록, 이 중 **교수 자녀*가 21건**(논문 8건, 프로시딩 13건), **친인척·지인 자녀가 22건** 포함
  * 조사대상을 비전임 교원 포함, 프로시딩까지 확대함에 따라 교수 미성년 자녀가 추가 발굴됨
- 특수관계 없는 경우 고교 R&E 연계 참여가 252건, 자발적 참여가 103건

1) '연구부정' 판정 건(2건) 조치 현황

소속 대학	대상 교수	대상 자녀	논문/프로시딩 (국비지원)	자녀진학대학 (진학년도)	사후조치 현황
동의대	ㄱ교수	학생1	프로시딩(자체)	국내대학('17) 교과일반전형	(교수) 견책 징계처분 결정('19.4.22) (학생) 대입 미활용 확인(교과전형)
배재대	ㄴ교수	학생2	논문(자체)	국내대학('16) 특기자 전형	(교수) 경고조치 (학생) 대입활용여부 조사 중

4. 관련 제도 개선 경과

□ 미성년자의 논문 참여 절차 개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통해, 미성년 논문 저자의 경우 '소속 기관'과 '학년'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 부과('18.7.)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는 논문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연구협약에 명시('18.12.)

□ 연구부정행위 제보·상담 온라인 원스톱 창구 마련

○ 미성년자 공저자 등 각종 **연구부정 관련 제보 핫라인*** 마련('18.5., 붙임3)

*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 신고 및 접수 > 연구부정 제보// 042-869-6017

□ 대입 관련 제재 강화 추진

○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등 대입전형 자료에 논문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 완료

* 논문을 자기소개서 등에 작성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

○ 입학전형자료 허위 기재시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18.11.,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5. 향후 추진계획

□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139건) 관련

○ **연구부정 있음(12건) 중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건**(가톨릭대, 서울대)은 조속히 진행하고, 대입 활용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후속 조치 진행(~'19.상반기)

○ 재조사요청(85건) 논문에 대해서는 **대학 및 지원부처에서 조속히 재검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 확인(~'19.8.)

□ **전체 미성년 저자 논문(410건)** 관련

ㅇ **연구부정 있음(2건)**에 대해 교수 징계 추진 및 대입 활용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후속조치 진행(~'19.상반기)

ㅇ 대학의 1차 검증결과에 대해 **교육부 검토자문단을 통해 검증절차** 등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19.5.~11.), 부적절 검토 건에 대해 **대학·지원부처에 재검증을 요청**하여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

⇒ 부실학회 참가자·횟수,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건수 등이 높은 15개 대학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특별조사 진행** 추진('19.6월~)

⇒ **연구부정행위 판정 및 대입에 활용된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공개**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 진행(상시)

□ 대학별 미성년 자녀/전체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조사 현황(549건)

연번	대학명	자녀	미성년 전체	소계	연번	대학명	자녀	미성년 전체	소계
1	가천대학교	3	3	6	37	세종대학교	3		3
2	가톨릭관동대학교	2		2	38	숙명여자대학교	3	2	5
3	가톨릭대학교	4	7	11	39	순천대학교	1	12	13
4	강릉원주대학교		2	2	40	순천향대학교	2		2
5	강원대학교		5	5	41	아주대학교	2	11	13
6	건국대학교	4	13	17	42	안동대학교	2		2
7	경남대학교		10	10	43	연세대학교	8	14	22
8	경북대학교	7	13	20	44	영남대학교	3	16	19
9	경상대학교	5	31	36	45	영산대학교	1		1
10	경인교육대학교		2	2	46	용인대학교		2	2
11	경일대학교	4		4	47	울산대학교	1	4	5
12	경희대학교		1	1	48	을지대학교	1		1
13	계명대학교		1	1	49	이화여자대학교	1	14	15
14	고려대학교	1	13	14	50	인천대학교	2	6	8
15	공주대학교		5	5	51	인하대학교	5	1	6
16	국민대학교	6	10	16	52	전남대학교	1	4	5
17	단국대학교	3	9	12	53	전주교육대학교	2		2
18	대구대학교	2	6	8	54	제주대학교		9	9
19	대진대학교	2	4	6	55	조선대학교		7	7
20	동국대학교		6	6	56	중앙대학교	2	7	9
21	동아대학교	1		1	57	차의과학대학교		3	3
22	동의대학교	1	17	18	58	창원대학교		2	2
23	목포대학교		5	5	59	청주대학교	1		1
24	배재대학교		2	2	60	충남대학교	1	10	11
25	부경대학교	4	20	24	61	충북대학교		1	1
26	부산가톨릭대학교		1	1	62	침례신학대학교	1		1
27	부산교육대학교		1	1	63	포항공과대학교	4		4
28	부산대학교	3		3	64	한국교원대학교		2	2
29	삼육대학교	1		1	65	한국교통대학교	2	2	4
30	상명대학교	1		1	66	한국외국어대학교	3	1	4
31	서강대학교		3	3	67	한국해양대학교		3	3
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		1	68	한밭대학교	1	4	5
33	서울교육대학교	1	2	3	69	한서대학교	1	2	3
34	서울대학교	14	33	47	70	한양대학교	2		2
35	서울여자대학교	1	5	6	71	호서대학교		13	13
36	성균관대학교	10	23	33	72	홍익대학교	2	4	6
					73	한양대		1	1
					합계		**139**	**410**	**549**

붙임 2 **와셋(WASET) 등 부실학회 참가 실태조사 결과**

1. 개요 · 추진경과

○ 와셋(WASET) 등 부실학회에 한국 연구자 다수 참가 최초보도('18.7.19, MBC 등)

> ※ **보도내용('18.7.19.)** "돈만 내면 가짜 논문으로도 참가‥황당한 국제학술대회"
> - 사이비 학술단체 와셋(WASET :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을 이용한 한국 학자들의 수가 2014년 이후 급증
> - 와셋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오믹스(OMICS)의 경우 2009년부터 지금까지 177개 기관의 한국 연구자 1,812명이 이용

○ 조사 및 조치 현황

기간	주요내용	
'18.8.~9.	1차(자체) 조사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대학 **237교** 소속 연구자의 최근 5년간 해외출장내용 **전수조사**(부실학회 참석 자진신고) - 과기부 : 4대 과기원·출연연 소속 연구자 참가현황 조사
'18.9.~10.	2차(직접) 조사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직접 **NTIS 등 DB를 활용**하여 대학 조사결과와 비교·대조, 국가연구비로 참가 **누락건 발굴** - 당초 참가자 없음을 보고한 대학 155교 중 **16교, 71명 발굴**
'18.9.12	과기부·교육부 조치방안 발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18.9.~'19.5	대학 자체감사	부실학회 참가 90개교, **자체감사 및 징계** 등 진행 중
'19.4~	출장비 회수 등	교육부 등, 자체감사 결과 국가연구개발비로 부실학회 참가한 대학 연구자에 대한 **출장비 회수 및 정밀정산** - 국가연구비로 부실학회 참가자 수 : **473명 655회(672과제)** 교육부(255), 과기부(199), 산업부(86), 국토부(33), 농림부(18), 중기부(18), 복지부(18), 농진청(10), 행안부(7) 등 **19개 부처**

○ 부실학회 참가자 및 처분 현황

- 국가 연구비 및 대학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총 **90교, 574명이 808회 참가**

참가횟수	교원 수	징계조치 현황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미조치	비고
1회	455명	413	3	-	39*	*전남대(13), 제주대(4), 고려대(4) 등
2~6회	112명	39	71	1	1*	*세종대(징계시효 경과)
7회 이상	7명	-	2*	5	-	*강릉원주대(징계시효 경과 등)
합계	574명	452	76	6	40	

※ 연구윤리 교육 대상자(학생 등) 참가 현황 : 688명(1회 627명, 2~6회 61명)

○ 처분 유형별 사유

구 분	1회	2~6회	7회 이상	계
미조치	39명 ▪ 고의·반복적 참석 아니어서 복무위반 없음으로 판단 (전남대, 영산대, 가톨릭관동대, 경성대, 대진대, 창원대) ▪ 소명서 심의 결과 학술활동 성실성 참작 (고려대)	1명 ▪ 징계시효 도과 (세종대)	-	40명
중징계	-	1명 ▪ 귀국보고서 허위 기재 (전남대)	5명	6명
경징계	3명 ▪ 본인 1회 참석하였으나 학생 2~3회 참석 (강원대, 호서대) ▪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그대로 국외 전문 학술지에 투고하여 성과 중복 인정 (계명대)	71명	2명 ▪ 징계시효 도과 등 (강릉원주대)	76명
주의 경고	413명	39명 ▪ 부실학회 사전 미인지, 발표 초록이 추후 국내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점 참작 (국민대) ▪ 복무사항, 연구비 정산, 논문 표절 검사 문제없고, 발표 논문이 KCI, SCI급 학술지 게재된 점 참작 (서울시립대) ▪ 소명서 심의 결과 학술활동 성실성 참작 (고려대) ▪ 징계시효 도과 (한국교통대, 경북대, 성균관대, 동아대 등) ▪ 대학재원으로 참석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경남대, 경상대, 아주대 등) ▪ 부실학회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고의성이 없음 (홍익대)	-	452명
계	455명	112명	7명	574명

○ 상위 30개교 대학별 현황

학교명	참석자수 (조치대상자수)	참석 횟수	1회	2~6회	7회 이상	처분 수준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미조치
서울대	115 (42)	49	37	5		37	4		1
경북대	61 (23)	34	16	7		17	6		
전북대	45 (22)	38	17	4	1	18	3	1	
부산대	51 (18)	25	14	4		14	4		
중앙대	48 (18)	25	15	3		15	3		
연세대	74 (17)	17	17			16			1
세종대	41 (17)	28	11	6		9	4		4
성균관대	34 (15)	23	9	6		10	5		
동아대	29 (15)	35	8	6	1	11	3	1	
경상대	24 (15)	25	11	4		12	3		
전남대	27 (14)	15	13	1				1	13
경희대	26 (14)	15	13	1		13	1		
가천대	20 (14)	17	11	3		10	3		1
제주대	23 (11)	14	8	3		6	2		3
부경대	20 (10)	10	10			10			
경남과학기술대	18 (10)	14	7	3		8	2		
한국교통대	17 (10)	15	6	4		9	1		
대구대	12 (10)	19	8	1	1	8	1	1	
국민대	26 (9)	18	5	4		9			
한양대	24 (9)	9	9			9			
강릉원주대	22 (9)	28	4	3	2	6	3		
아주대	22 (9)	12	7	2		9			
충북대	19 (9)	13	8	1		8	1		
순천향대	18 (9)	9	9			9			
동국대	17 (9)	14	7	2		8	1		
호서대	15 (9)	13	7	2		6	3		
서울과학기술대	12 (9)	11	8	1		8	1		
한밭대	10 (9)	10	8	1		8	1		
서울시립대	34 (8)	11	5	3		8			
울산대	13 (8)	9	7	1		7	1		
30개교 소계	917 (401)	575회	315	81	5	318	56	4	23
90개교 합계	1,262 (574)	808회	455	112	7	452	76	6	40

2. 7회 이상 참가자 현황

□ 강릉원주대

연구자명	ㄱ 교수	ㄴ 교수
참가 현황	▪ 8회	▪ 9회
소요 재원	▪ 대학 자체 재원 4,000천원 ▪ 정부 연구비 32,725천원	▪ 대학 자체 재원 2,000천원 ▪ 정부 연구비 등 23,745천원
소명 사항	▪ 여타 학회와 같이 학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 매년 다수의 학술대회가 개최, 학문분야별 세션 구분이 불확실 등 WASET 학술대회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을 인지	▪ 최근 논문 게재 시 2개월 간 리뷰과정을 거쳐 부실 학회임을 인지하지 못함 ▪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하기는 부족한 논문이나 사장시키기 아까워, 학술대회 발표와 동시에 논문게재 해주는 WASET 이용
조치 결과	▪ (인사) 견책('19.3.19.) ※ 소명자료 충실, 발표논문이 SCI급 학술지 게재 등 논문의 우수성 인정	▪ (인사) 견책('19.3.19.) ※ 징계 시효기간이 지난 3회 참석 건수는 제외하고 6회 참석으로 봄

□ 단국대

연구자명	ㄷ 교수	ㄹ 교수
참가 현황	▪ 10회	▪ 9회
소요 재원	▪ 정부 연구비 27,315천원	▪ 정부 연구비 24,861천원
소명 사항	▪ 부실학회를 2008년 처음 이용 ▪ 부실학회는 연구 분야별 전문성 부족하나, 학생들이 이용하기 쉬운 학회로 인식 ▪ 다만, 예산 문제로 학생들은 포스터만 제출하고 실제 참석 및 구술발표는 본인이 주로 참석	▪ 부실학회를 2014년 처음 이용 ▪ 발표 시간, 논문 리뷰 기간이 짧고 단순하여 해당 학회에 지속적으로 참석 ▪ 발표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수의 해외 학회에 참석
조치 결과	▪ (인사) 정직 1월('19.3.1.) ▪ (행정) 해외출장제한, 포상추천제한, 보직임명제한, 연구년추천제한	

□ 대구대

연구자명	ㅁ 교수
참가 현황	▪ 9회
소요 재원	▪ 대학 자체 재원 20,507천원 ▪ 정부 연구비 16,052천원
소명 사항	▪ 본인 연구분야의 최신 연구결과를 습득하고자 연구분야 키워드로 구글링하여 학회 참석 ▪ 본인 연구분야 특성상 학과 단위의 대형 학회보다 학제간 연구가 발표되는 융합적 성격의 학회가 필요하였음
조치 결과	▪ (인사) 정직 3월('18.12.12.) ▪ (행정) 6년간 국고 또는 교비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 제한, 출장비 초과집행액 451,010원 환수, '14.8월 학사지도비·급량비·자가운전보조금 440,000원 환수

□ 동아대

연구자명	ㅂ 교수
참가 현황	▪ 7회
소요 재원	▪ 대학 자체 재원 3,500천원 ▪ 정부 연구비 16,458천원
소명 사항	▪ 여타 학회와 같이 학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 대학원생이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것이 취업 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 연구 성과 홍보에도 기여
조치 결과	▪ (인사) 자체감사 중 면직 처리('19.1.10.)

□ 전북대

연구자명	ㅅ 교수
참가 현황	▪ 11회
소요 재원	▪ 정부 연구비 33,432천원
소명 사항	▪ 여타 학회와 같이 학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 학회 및 발표 논문은 보통 수준이었음 ▪ 본인이 발표한 논문은 가짜 논문이 아님
조치 결과	▪ (인사) 중징계 재심의 완료('19.5.8.) → 징계위 회부('19.7.이내)

붙임 3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

□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 → 고객마당 → 신고 및 접수 → 연구부정행위 신고